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(KIST)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

의안 번호	3587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6년 3월 30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인 “개포디지털혁신파크(무중력지대 강남)” 시설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(KIST)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공동 연구실(JQL) 운영을 위해 공간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4호, 제17조제5항제4호에 의거, 사용료 면제를 추진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사용료 면제 공유재산 현황

- 소재지 :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53 / 무중력지대 강남(1~2층)
- 사용자 : 한국과학기술연구원(KIST)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
- 허가면적 : (토지) 703.3 m^2 , (건물) 300.9 m^2
- 허가기간 : '26.5.~ '29.12.(3년 8개월)
- 감면예상액 : 총 802,993천원

나.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필요성

- 서울시는 市 전략사업(AI·바이오·금융 등)과의 융합을 통해

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, 초기 단계인 양자기술의 산업화 기반을 구축하고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양자기술 육성을 추진하고 있음

- 한국과학기술연구원(KIST)의 ‘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’은 과기정통부가 지정한 국가 양자기술 연구거점으로, 산·학·연 공동 연구를 통해 핵심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수행하는 국가 전략 연구사업임
- 이에 서울 내 양자분야 산·학·연 협력 기반의 공동연구 공간을 조성하여 초기 단계인 양자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, 서울 양자산업 발전을 견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여 안정적인 연구거점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4호, 제17조제5항제4호
- 「과기출연기관법」 제8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- 2026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('26.3.12.)
 - 심의근거 :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6조제2항제5호
 - 심의결과 : 조건부 적정(심의회 동의 후 추진)

※ 작성자 : 경제실 첨단산업과 강평선(☎2133-8750)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(공유재산법)

제16조(공유재산심의회)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5.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

제20조(사용허가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**수의(隨意)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.**

1. 허가의 목적·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제24조(사용료의 감면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4.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**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**로서 **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**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(공유재산법 시행령)

제13조(사용허가의 방법)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(隨意)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4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,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,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(이하 “정부출연연구기관등”이라 한다) 또는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

제17조(사용료 감면) ⑤ **법 제24조제1항제4호**에서 “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4. **제13조제3항제8호** 및 **제14호에 해당**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

□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(과학기술출연기관법)

제8조(연구기관의 설립)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**별표**와 같다.